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 가 유 산 수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업무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2. ~ 2026.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구축·운영”을 “관리”로 한다.

7.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 5. (생략)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공개 <신설>	6. ----- ----- ----- 관리 ----- 7.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④·⑤ (생략)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
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
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
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관한 사무

7.·8.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6.·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
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연락처	(042) 481 - 4966